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11일 01시 41분



목차

목차	2
어업폐지신고	3
구비서류	3
처리절차(흐름도)	3
관련법규	3
수산업법 제48조 제28조(어업폐업의 신고)	3
유의사항 및 후속조치	4
벌칙 및 과태료	4

어업폐지신고
= 전자민원 > = 분야별민원안내 > = 어선 및 어업허가 > = 어업폐지신고

어업허가사항(신청사항)변경신고	어업변경허가신청	어업허가증(신고증명서)재발급신청
어업폐지신고	어업허가 유예신청	어업휴업(개시)신고
어업허가신청	변경등록신청	어선건조,개조,건조(개조)발주 허가

구비서류

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1부

처리절차(흐름도)



관련법규

수산업법 제48조 제28조(어업폐업의 신고)

- 법 제41조 ·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어업신고를 한 자는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(개정 2010.4.28)
-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승계받은자가 제8조의2에 따른 어업허가지위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허가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.(개정 2010.4.28)
-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을 준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"허가를 받은 자"는 "어업폐업의 신고를 한 자(제2항의 경우에는 종전에 어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)"로 본다.(개정 2010.4.28)
- [제목개정 2010.4.28]

유의사항 및 후속조치

- 어업허가를 받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폐지신고서에 전원 기재 날인을 받은 후 수리
- 어업을 폐지하거나 할수없게 된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함

벌칙 및 과태료

수산업법 제102조 : 폐지신고를 하지않은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